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9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 ⑫ (생략)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⑦ ~ ⑬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산림문화·휴양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문화·휴양 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지역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됨.¹⁾

이와 같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적 여건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²⁾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산림청은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3)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2)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⁴⁾

산림청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수립 및 변경 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산림문화·휴양 분야 전문가 외에 산림문화·휴양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누락되어 있어,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1.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 농업·농촌·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7.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참고자료 **소관 등록 단체(법인) 현황('24년 기준) : 27개**

< 산림문화 관련 : 7개 단체 >

단 체 명	설립일자	주 소	대표자
한국꽃누르미협회	'01.11.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호 65번길 16-16	도주현
한국아트플라워협회	'01.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1401호	최경애
숲과문화연구회	'04.08.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미주상가A동 421호	박봉우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05.05.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18(4층)	유영초
한국산림문화학회	'09.03.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산림과학원내 나무병원2층	김선길
팔공산문화포럼	'13.12.31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밤3길 33	홍진규
한국산서회	'18.07.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60, 2층 201호(성원상가 2층)	박기성

< 산림휴양 관련 : 4개 단체 >

단 체 명	설립일자	주 소	대표자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05.09.16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7(문화동)	정은조
한국산림휴양경관협회	'18.04.25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B동 1609호(윙스타워)	이수호
산림휴양협회	'19.07.26.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193-1번지, 2층	서동명
한국트리하우스협회	'23.11.02	경기 평택시 삼봉로 442-15	정지인

< 숲길정책 관련 : 10개 단체 >

단 체 명	설립일자	주 소	대표자
한국산악회	'98.09.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60(우이동1) 성원상가 지하	변기태
한국산악문화협회	'03.12.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35 롯데클라시엘 208-1104	이대희
한국등산연합회	'04.11.0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8 대한빌딩 5층 501호	서성식
숲길	'07.02.02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2길 95	홍익진
대한산악구조협회	'09.12.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제2체육관 106호	노익상
한국대학산악연맹	'09.1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65(서초동, 아주빌딩)	이동훈
한국트레킹연맹	'11.09.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9길9 산림비전센터 404호	김주연
한국숲길등산지도사협회	'12.08.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25번길 44 2층 202호	이학규
숲을찾는 사람들	'15.07.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녹번동,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강세훈
속리산둘레길	'16.02.16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743 (구)법주분교	박연수

< 등산·레포츠 관련 : 6개 단체 >

단 체 명	설립일자	주 소	대표자
대한산악스키협회	'03.0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제2체육관 106호	이철주
한국산악승마협회	'04.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38길 19 301호	백영철
한국산악마라톤연맹	'10.02.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4 2층	박충규
대한트레일런협회	'17.07.2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48번길 34	황선용
한국트리플레이밍협회	'22.06.14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관리동	이종현
한국산악교류협회	'24.0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7길 4, 6층	김미곤